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 경위

- 가. 발 의 자: 전철수 의원 외 14인
- 나. 의안번호: 제1264호
- 다. 발의일자: 2016. 6. 9
- 라. 회부일자: 2016. 6. 10

### 2. 제안 사유

- 서울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충전시설 설치,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비율 설정 등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보급시책 수립·추진(안 제3조)

다. 구매 비율(안 제4조)

라. 구매자, 소유자, 운행사 지원(안 제5조~제6조)

마. 충전시설 설치(안 제7조)

####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나. 조례안의 제안배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배출<sup>1)</sup>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sup>2)</sup> 대기질 개선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기자동차는 2015년 한해에만 전세계적으로 55만여대가 보급되는 등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보급실적은 2015년말 현재 5,767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중 서울시는 19.3%인 1,316대를 보급하였음.



<그림 3>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2015년)

1)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직접배출하지는 않으나,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오염물질배출은 배출하고 있음  
2) 내연기관 총괄에너지효율 17%, 전기차총괄에너지효율 37%(미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연구소)

- 이에,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충전시설 설치,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비율 설정 등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다. 검토의견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
- 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외에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유사한 개념으로 “**저공해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고 있어<sup>3)</sup>,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부터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3) 1종 저공해자동차 : 전기차,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 무공해 인증차량

2종 저공해자동차 : LPG차량, CNG차량,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량 중 배기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차

3종 저공해자동차 : DPF/CPF 장착 경유차량, 가스개조차량 등 대기 오염물질이 2종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자동차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을 전기충전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충전시설,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시설 과 구분하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하여 사용한 것임.

###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안 제4조)

-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 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하고, 구매비율은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매비율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시행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 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서는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4)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 입할 경우 국고보조금<sup>4)</sup> 및 충전인프라를 위한 충전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도 부여하고 있음.

---

4) 2016년도의 경우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고보조금은 1,200만원, 서울시 보조금은 구매자에 따라 다르지 만, 민간보급의 경우 45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비 보조 400만원이 지원된다.

## 5)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표지<sup>5)</sup>가 있는 만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림 2〉 저공해 자동차 표지



〈그림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5)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와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제3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경우 혼잡통행료 감면<sup>6)</sup> 또는 주차요금 할인<sup>7)</sup>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7) 충전(充電)시설 설치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전(充電)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민간이 설치할 경우 금융지원과 기술 지원 등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1월에 개정된 「주차장법」<sup>8)</sup>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sup>9)</sup>이 통과될 경우 100면 이상의 노상, 노외, 공공기관

6) 1종, 2종 저공해자동차는 면제, 3종 저공해자동차는 30% 감면해주고 있음

7) 공영주차장은 1~3종 모두 최대 50%까지 할인

8) 시행일은 2016년 7월 20일임

부설주차장에는 3%이상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이 설치되고, 충전 시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전기승용차의 민간보급을 확대하는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공공주택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 및 완속충전기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임.



# 관 계 법 령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 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 5. (생략)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3.28.]

제23조(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구매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제22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1. 해당 연도의 차종별·연료별 자동차 판매계획
  2. 해당 연도에 판매계획 중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
  3.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계획
  4.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인증서 또는 인증계획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0.6.]

**제23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제22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비교·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30일 이내에 자동차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29.> [전문개정 2008.10.]

**제25조(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의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1.3.31.>

-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은 별표 6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8.10.6.]

## □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저공해자동차 표지규격(제4조 관련)

#### 1. 표지도안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NX300h(2,494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94cc)
6.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심 1회충전 주행거리는 19 km 이상
  - 나. 최고속도 : 60 km/h 미만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7 km 이상
  -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50 km 이상
  -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서울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
  5. 닛산 리프 “LEAF” 전기자동차
  6.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이바 이프리머스(e-PRIMUS)
  2. 티지엠 이화이버드(e-FIBIRD)
-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제5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 한다.

②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구 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ℓ)		
	휘발유	경유	LPG
1000 cc 미만	19.4	-	15.5
1,000 cc~1,600 cc 미만	15.8	21.6	13.2
1,600 cc~2,000 cc 미만	14.1	16.0	11.4
2,000 cc 이상	11.8	14.3	9.7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ℓ)
18.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한다.

3. 전기자동차의 기준

구분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중·대형승합자동차
	저속	고속			전기버스
	경형·소형·중형	경형	소형	중형	
에너지소비효율 (km/kWh)	3.5 이상				1.0 이상

\*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저속전기자동차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9., 2013.10.4.>

1.~9.(생략)

10. 제2조제3호가목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9.9.29., 2013.10.4.>

1. 제2조제3호가목 중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나목의 자동차 중에서 시장이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

## □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10.3.22.]

## □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1.9.29., 2013.5.16., 2013.10.4.>

1. (생략)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